

서울특별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61호
2.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찬성자 30명)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각종 행사 및 축제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집행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거나,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주요 행사에 대해 예산 정보를 포스터, 리플릿, 온라인 홍보물 등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여, 시민이 직관적으로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행사예산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행사예산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행사예산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산 공개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안 제6조).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의 홍보물에 해당 행사의 예산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시민이 그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행사예산 공개 관련 입법현황

-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과 세부사업별 정보를 홈페이지 등¹⁾을 통해 공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통합공시 하도록 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²⁾를 통해 이를 공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지방재정365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인 ‘행사축제원가

1) 서울재정포털(<https://openfinance.seoul.go.kr/index>) 및 서울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budget/list>)

2) <https://www.lofin365.go.kr/>

회계정보’를 공시·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결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의 행사·축제를 공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역시 매년 결산기준 재정운용공시에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를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³⁾에 공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재정운용공시는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공시된다는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예산을 해당 행사의 홍보물 등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음⁴⁾. [참고자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를 반영한 것으로, 시민이 보다 손쉽게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행사·축제성 예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행사”를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행사, 관광 행사, 체육행사, 박람회 등으로 정의하고, “홍보물”을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3)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data_finance-c1/data_year_finance-n2#none

4)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에 조례를 제정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등이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관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유관 조례가 제정된 바 없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행사, 관광 행사, 체육행사, 박람회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이 중 행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동 조례안과 달리 다른 지자체의 조례의 경우 “행사”를 해당 지자체가 주최, 주관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또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처럼 동 조례안이 행사예산의 공개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2~3개의 출자·출연 기관만 두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는 16개의 출연 기관을 두고 있고, 이러한 출연 기관들이 대부분 매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나. 행사예산 공개 의무 및 공개 내용(안 제3조 및 제4조)

- 동 조례안은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시 사업부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자치구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행사의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용은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로 하고 있음.

제3조(행사예산 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시 사업부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자치구 등 보조사업자는 행사의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내용) 제3조에 따라 홍보물에 공개하여야 하는 행사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예산
2. 재원별 금액(국비, 시비, 자치구비 등) 및 그 비율

- 동 조례안이 행사예산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집행 주체에게 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조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 보조사업자의 행사 관련 자체예산까지 공개하는 것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또한 서울콘과 같이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매칭이나 후원을 통해 추진되는 행사는 후원 기업이 후원금액을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기업의 후원 규모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사축제원가 회계정보에서는 국가주관 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구성원에 기인한 행사, 주민대상 교육 및 국경일 등 기념행사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리고 타 지자체의 입법례에서는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1천만원~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동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서울시 및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조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개 대상인 행사의 종류와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 기준 >

행사예산규모	해당 지방자치단체
1천만원 이상	인천 계양구
2천만원 이상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경기 이천시, 경남 통영시
3천만원 이상	광주 서구, 충남 금산군, 인천 남동구, 충남 당진시, 부산 연제구, 서울 강북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영등포구,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원주시, 인천 동구, 충남 천안시, 경기 평택시
5천만원 이상	경기 군포시, 대전 유성구, 부산 기장군, 서울 강동구, 충남 예산군, 경기 화성시
7천만원 이상	인천 서구

다. 공개 방법 및 공개여부의 반영(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 및 제6조는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기할 경우 시인성이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고, 동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연도 해당 행사 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5조(공개 방법) ①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표기할 때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은 홍보물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알아보기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표기 크기는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으로 행사예산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제6조(공개 여부의 반영) 서울특별시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사가 다음 연도에도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다음 연도의 해당 행사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행사예산의 공개 방법과 공개 여부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조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홍보물 종류와 성격에 따라 표기의 위치와 크기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례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지침 등을 통해 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참고자료]

서울시 동대문구

2025 동대문구 봄꽃 축제

2025.4.5.(토)-4.6.(일)

장안1수변공원 (동대문구 장안동 24-1)

날짜	시간	내용
4.5(토)	18:00-21:00	MODI의 봄축제연주 K-POP CLASSY (K-pop)
4.6(일)	10:00-19:00	MODI의 봄축제연주 K-POP CLASSY (K-pop)

2025 동대문구 봄꽃 축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예산 2억 8천만원(구비 2억 2천만원, 시비 6천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충남이면 흥분해!
천안
2025-2026 충남문화관광
축제의 계절

충청남도 1시군 1품 축제 선정
불꽃놀이 없는 친환경 축제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2025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9.24(수)-9.28(일) 천안종합운동장 및 천안시 일원

천안문화재단

천안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FIDAF

TOUR NOW

총 예산 : 3,500,000,000원
도 비 : 500,000,000원(14.3%)
시 비 : 3,000,000,000원(85.7%)